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40회 콜로키움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에 대하여 모두 **헌법불합치**하다 결정하며 **금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 조항들의 개정을 명했습니다.

현재는 현 법률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으로는 적합한 수단이긴 하나,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의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2012년 태아의 생명권을 임부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무겁게 본 현재의 합헌 결정과 달라진 것으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하는 것 자체가 모두 헌법 위반은 아니지만,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고려한 결정가능기간과 사유, 상담 요건이나 숙려기간 등의 일정한 절차나 요건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낙태죄에 대한 시각 변화를 반영한 것이긴 하나, '생명 보호'에 대해 조건을 통한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제 그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조건에 대한 생명윤리적 논의와 숙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이러한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배경과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개정입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생명윤리적 논의를 교환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주 제 : 현재 결정 이후, "낙태"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
- 연 자 : 이석배 교수(단국대 법대)
- 일 시 : 2020년 10월 6일(화) 오후 3시
- 장 소 : 온라인 웨비나 (사전등록 필수, 아래 링크로 등록 가능)
-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I-aFssZOQgmkh6VQ8l6GTQ
- 문 의 : 이연호 주임연구원(yhlee@nibp.kr)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번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미리 접수받습니다.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행사담당자 이메일(yhlee@nibp.kr)로 9월 29(화)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